(2년형 참여자용)

환급금 지급 희망 확인서

1. 참여 현황

사업장명			사업자등록번호	
청년명/생년월일 (청년 연락처)		. .	사업장 담당자명 (담당자 연락처)	
	- -			- -

2. 확인 사항

- 본인부담금 24회 및 4회차까지의 취업지원금, 기업기여금 정상 적립
- 사업주 귀책사유로 5회차 지원금 적립 불가
- 환급금 지급 희망 : 총 1,200만원 및 이자 (자기부담금 300만원 + 취업지원금 900만원)
- 환급금 수령 이후 사업주 귀책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업기여금 지급 불가능
- 환급금 수령 이후 재가입기회 미부여

청년 본인은 「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」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해 확인합니다.

[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p.42] II-1. - 4. - 4. - 참고

◆ (청약 승낙일로부터) 2년 이상 근무자 중 마지막 회차 미적립자의 환급금

○ (지급 대상) 청약 승낙일 이후 공제가입기간(24개월)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중 본인부담금(24회)을 모두 적립하고 4회차까지의 취업지원금, 기업기여금이 정상 적립된 경우

○ (지급 요건) 사업주 귀책사유*로 5회차 지원금 적립이 되지 않고 사업주 귀책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

* 고용보험료 체납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4회차 이후 임금이 체불되어 해소되지 않는 경우

○ (환급금) 청년(핵심인력) 자기부담금 300만원 + 취업지원금 900만원 → 총 1,200만원 및 이자 (기업기여금 전액 국가로 환수)

* 환급금 수령 이후 고용보험료 체납 및 임금체불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업기여금 추가 지급은 불가능하며 재가입기회도 미부여

* 공제금리: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.

20 년 월 일

확인자(청년) (서명 또는 인)

대표자(기업) (서명 또는 인)

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귀하